

아름다운 여수, 행복한 시민



제 2019-111호
2019년6월17일(월)

여수시보

시정지표

- 1. 시민공감
- 1. 균형있는
- 1. 사람중심
- 1. 품격있는
- 1. 살기좋은
- 감상나눔문화
- 동생높은정
- 시경복지관
- 정제관광경

■ 발행인 : 여수시장 ■ 발행소 : 공보담당관실 / 여수시 시청로 1(학동) ☎ 659-3023 FAX) 659-5803

목 차

【고 시】

- 여수시 고시 제2019-167호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 고시 /3
- 여수시 고시 제2019-169호 2019년 해수욕장 개장 고시 /4

【공 고】

- 여수시 공고 제2019-1521호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을 위한 재 입법예고 /8
- 여수시 공고 제2019-1528호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공고 /23
- 여수시 쌍봉동 공고 제2019-70호 쌍봉동 43통 통장 모집 공고 /25
- 여수시 돌산읍 공고 제2019-12호 2019년도 3/4분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 /28

회								
람								

여수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 승인(신고) 고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17조 규정에 의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을 승인(신고)하고 고시합니다.

승인 (신고) 번호	실시계획 승인 (신고)수리	시 행 자		사업착수 예 정 일	사업준공 예 정 일	점용·사용 장 소	공사내용
		주 소	성 명				
2019-14	2019.6.17.	여수시 시청로1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	2019.6.17	2019.9.14	남면 유송리 139-11번지 일원	대소유권 연안시설 정비공사
2019-15	2019.6.17.	여수시 시청로1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	2019.6.17	2019.12.13	남면 횡간리 15-5번지 일원	소횡간도 여객선 접안시설 공사
2019-16	2019.6.17.	여수시 시청로1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	2019.6.17	2019.12.13	남면 우학리 1275-1번지 일원	남면 학동 방파제 보강공사
2019-17	2019.6.17.	여수시 시청로1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	2019.6.17	2019.9.8	남면 횡간리 326번지 일원	횡간도 방파제 연장공사
2019-18	2019.6.17.	여수시 시청로1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	2019.6.17	2019.12.13	남면 화태리 507-41번지 일원	묘두 방파제 연장공사
2019-19	2019.6.17.	여수시 시청로1	여수시장 (섬자원개발과)	2019.6.17	2019.9.8	남면 두모리 945-17번지 일원	직포마을 해안도로 정비공사

2019. 6. 17.

여 수 시 장

2019년 해수욕장 개장 고시

2019년 여수시에서 개장·운영하는 해수욕장 내역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6월 17일

여 수 시 장

가. 해수욕장 개장 현황

명 칭	소재지	백사장 조건			비고
		길이(m)	폭(m)	관리상태	
방죽포	여수시 돌산읍	165	35	적합	
거문도	여수시 삼산면	285	-	적합	
장 등	여수시 화양면	150	15	적합	
안 도	여수시 남 면	255	20	적합	
만성리 검은모래	여수시 만흥동	735	50	적합	
무술목	여수시 돌산읍	435	20	적합	
모사금	여수시 오천동	225	30	적합	
응천 친수공원	여수시 시전동	360	10	적합	

나. 해수욕장 개장기간 및 시간

명 칭	개장기간	개장시간 (입수시간)	비 고
방죽포	'19. 7. 6. ~ 8. 18.	09:00~18:00	
거문도	'19. 7. 6. ~ 8. 18.	09:00~18:00	
장 등	'19. 7. 6. ~ 8. 18.	09:00~18:00	
안 도	'19. 7. 6. ~ 8. 18.	09:00~18:00	
만성리	'19. 7. 6. ~ 8. 18.	09:00~18:00	
무술목	'19. 7. 6. ~ 8. 18.	09:00~18:00	
모사금	'19. 7. 6. ~ 8. 18.	09:00~18:00	
웅천	'19. 7. 6. ~ 8. 18.	09:00~18:00	

다. 해수욕장 시설현황

구 분	기 능 시 설			편 의 시 설	
	화장실	샤워장	급수대	주차장	야영장
방죽포	1	1	1	350대	
거문도	1		1	20대	
장 등	1	2		50대	
안 도	1	1	1	20대	
만성리 검은모래	2	1	4	250대	
무술목	1		2	50대	
모사금	1	1	1	200대	
웅천 친수공원	1	1	4	517대	

라. 해수욕장 위탁 현황

연번	해수욕장명	협약기간	위탁관리자	비고
1	만성리	2019. 7. 1. ~ 2020. 6. 30.	만성리해수욕장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수)	
2	방죽포	2019. 7. 1. ~ 2020. 6. 30.	방죽포해수욕장운영위원회 (위원장 김병곤)	
3	모사금	2019. 7. 1. ~ 2020. 6. 30.	모사금피서지운영위원회 (위원장 김행곤)	

마.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

시설명칭	기준	구분			비고
		대	중	소	
텐트	1동	대 20,000원	중 10,000원	소 5,000원	1일기준
샤워장	1인	성인 2,000원		어린이 1,000원	
주차장	1대	버스 10,000원	승합차 5,000원	승용차 3,000원	1일기준

바. 이용자 준수 사항

- 해수욕장 지정구역 내에 설치된 수영경계 부표 내에서 해수욕 준수
- 개장 시간(수영 시간) 준수 및 기상 악화에 따른 수영 통제 시 수영금지 준수
- 음주 후 입수 및 수영 금지
- 폭죽놀이, 오물투기 행위, 백사장내에서의 취사행위 등 환경저해 행위 금지 준수
- 기타 질서 및 안전을 위한 해수욕장 운영자의 통제사항 준수
- 기타 허가받지 않은 행사 등 관광지 이미지 저해 행위
- 공유수면(백사장) 사발이(ATV)운행 전면 금지
- 무허가 불법영업 상행위 일체 금지

사. 이용안내 : 여수시청 해양항만레저과 ☎ 659-3966~9

읍면동	해수욕장명	읍면 담당자 연락처
돌산읍	방죽포	061-659-1030
	무술목	
화양면	장등	061-659-1168
남 면	안도	061-659-1202
삼산면	거문도	061-659-1273
만덕동	만성리	061-659-1558
	모사금	
시전동	응천	061-659-1619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국가를 위해 공헌하신 분들을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과 변화된 장례문화에 맞는 조례 일부를 다음같이 개정한다.

여수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여수시에서 설치한 장사시설의 사용 및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공설장사시설”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설치한 공설 묘지, 공설자연장지, 공설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바람직한 장사문화의 정착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장사시설의 안정적 공급과 건전한 장사문화 정착을 위한 시책 수립·추진
2. 묘지의 증가로 인한 국토의 훼손을 방지하고 화장·봉안·자연장의 확산을 위한 시책 발굴 및 추진

제3조의2(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 시장은 공설장사시설 주변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및 주거환경 개선 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 할 수 있다.

1. 생활개선사업비
2. 주민숙원사업비
3. 급수시설 유지 관리비
4. 위생해충 방역 유류비

제4조(장사시설의 수급계획) ① 시장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묘지 등 장사시설의 수급에 관한 중·장기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장사 문화의 개선과 지역별 균형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장사시설의 수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 연구

기관에 기초자료의 수급·연구 및 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소요되는 경비를 지급 할 수 있다.

제5조(묘지 등의 설치 제한지역) 시행령 제22조제4항제11호의 "붕괴·침수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지역" 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시설설치 예정부지의 경사도가 30도 이상인 급경사지역
2. 하천, 제방 등의 바닥보다 낮은 저지대
3. 산사태, 침수 등 재해발생 우려지역으로 국가 또는 시에서 지정 관리하는 지역과 재해가 자주 발생하여 항구적인 안전대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시장이 지정하는 지역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지역

제6조(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기준) 시행령 제15조의 별표 2 사설묘지의 설치기준의 단서 규정과 시행령 제18조의 별표 3 사설화장시설 및 사설 봉안시설 설치기준에서 그밖에 설치할 수 있는 장소란 묘지 및 봉안시설 설치예정 지역이 다른 법령에 저촉되지 아니하며, 인근 마을이나 공공장소로부터 떨어져 있어 지형에 의하여 도로 및 인가로부터 보이지 않는 곳으로 마을 주민의 회의 등을 통하여 주민들이 동의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사업으로 묘지를 개장할 경우에는 주민들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제2장 공설장사시설

제1절 설치 및 운영관리

제7조 <삭제 2016. 4. 22.>

제8조(사용허가 및 신청)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사용허가신청에 관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사용자의 자격) ① 공설장사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일반 시민(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
2. 관내에 소재한 분묘에서 개장한 유골을 공설장사시설에 매장·화장 또는 봉안하고자 하는 자
3.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자

4. 특례자

5. 관외자(관내에서 사망한 관외에 주소를 둔 사망자). 다만, 화장시설 사용에 한한다.

② 제1항제4호의 특례자의 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10조(사용료 등) ①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는 별표 1과 같다.

② 시장은 사용료 및 관리비를 사용허가 또는 신고와 동시에 징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사용료 및 관리비 등을 납부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사용 전 시설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전액을 환불하고, 사용 중에 시설의 사용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별표 2에 따라 사용료를 환불한다.

제11조(사용허가 취소 등)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설장사시설의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개장 또는 원상복구를 명할 수 있다.

1. 공설묘지를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거나,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하였을 때

2. 임의로 분묘의 형태 및 구조를 변경하거나 봉안함을 허가없이 개방하여 타 공작물을 설치하거나 위반하였을 때

3. 관계법령 또는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4. 공공의 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

제12조(금지행위) ① 공설장사시설 내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봉안된 유골을 모독하는 행위

2. 고성방가 또는 난동 행위

3. 시설 및 기물을 파괴하거나 오물을 버리는 행위

4.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

제13조(원상복구 및 실비변상) 공설장사시설의 사용자, 수탁자 및 추모객이 기물과 시설 등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원상복구를 명하거나 필요한 실비변상을 요구할 수 있다. 분묘를 개장할 때에도 또한 같다.

제14조(사용자의 신고의무 등) 사용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사유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용자의 주소가 변경된 경우

2. 상속 등으로 사용권의 변동이 있는 경우

3. 공설묘지 사용허가증의 분실 또는 훼손 등으로 재교부 받고자 할 경우

제15조(운영·관리) 공설장사시설은 시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시장이 공설장사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6조(위탁방법) ① 시장은 제15조에 따라 공설장사시설을 위탁하고자 할 경우 「여수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개 모집으로 선정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장사시설을 위탁 관리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약에 의하여야 한다.

1. 위탁관리 기간
2. 위탁관리 방법
3. 시설관리
4. 시설 임대료
5. 계약 위반 시 조치사항 및 손해배상 조건
6. 그 밖에 위탁관리에 필요한 사항

제17조(수탁자의 의무 및 위탁의 해지) ① 공설장사시설 수탁자는 위탁 운영 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로서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관계법령 및 조례에 따른 준수사항과 시장의 업무상 지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의무 및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못하거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위탁에 대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 동안의 투자비는 시에 귀속된다.

1. <삭제 2016.4.22.>
2. <삭제 2016.4.22.>
3. <삭제 2016.4.22.>
4. <삭제 2016.4.22.>

④ 수탁자가 계약의 해지를 원할 때에는 6개월 전에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그동안 투자비는 시에 귀속된다.

제18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필요한 경우 공설장사시설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에 관한 처리지침을 시달하고 이의 이행여부를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에게 업무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수탁자에 대하여 위탁업무의 수행과 관련하여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탁업무의 운영사항과 장부·서류·시설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19조(관리 공무원 배치) ① 공설장사시설의 관리에 필요한 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원의 직종과 정원은 시장이 정한다.

제2절 공설묘지 및 자연장지

제20조(위치) 공설묘지와 공설자연장지는 여수시 소라면 의곡길 494에 위치한다.

제21조(공설묘지의 사용기간) ① 공설묘지 사용기간은 매장일부터 3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연장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사용기간이 만료될 때에는 기간만료일 3개월 전까지 사용자에게 연장 신청할 것을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의 사용기간 연장 허가를 받지 않을 때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무연고분묘로 간주하여 처리할 수 있다.

제22조(묘지의 면적제한 및 사용방법) ① 묘지 1기의 사용면적은 6.61제곱미터로 한다.

② 묘지는 이미 사용하고 있는 장선에 접속하여 차례로 이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 가족묘지의 조성을 위하여 공설묘지 이외의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을 이장하여 공설묘지에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4기 이내에 한하여 연접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연접 사용허가는 최초 매장 분묘를 기점으로 한다.

제23조(묘적부의 기록·관리) 시장은 묘지 사용자와 사망자의 관계를 기재한 묘적부 등 기타 필요한 서류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24조(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공설묘지에 매장하고자 하는 자는 사망하기 전에는 매매·양도·임대 및 사전계약을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70세 이상인 자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해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2.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3조제4호에 따른 뇌사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
3. 질병 등으로 6개월 이내에 사망이 예측되는 자의 묘지용으로 사용하기 위한 경우(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한 경우에 한한다)
4. 합장을 하는 경우(매장된 자의 배우자에 한한다)
5. 부부 중 먼저 사망하여 공설묘지 이외의 지역에 매장되어 있는 유골을 이장하여 연접 매장하고자 하는 경우

제25조(묘지사용권의 양도금지) 공설묘지의 사용권은 상속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인에게 전매 또는 양도하지 못한다.

제26조(분묘의 구조) ① 분묘는 시장이 정한 구조로 조성하여야 하며, 임의로 구조를 변경하거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없다.

② 묘비를 세우고자 하는 자는 시장이 정하는 규격에 따라야 한다.

③ 비석 설치를 의뢰하는 자에게는 석질에 따라 시장이 승인한 요금을 따로 징수할 수 있다.

④ 묘지의 형태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시장에게 재 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27조(개장명령 등) ① 제11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되어 개장명령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30일 동안의 기간을 주어 매장된 유골 또는 분묘를 수거하거나 개장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한다.

② 제1항의 통지에도 불구하고 수거 또는 개장하지 않을 때에는 시장은 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공고를 한 후 수거·개장 하고 그 비용은 묘지 사용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제27조의2<삭제>

제27조의3(공설자연장지의 사용) ① 공설자연장지의 사용(시체 및 개장유골을 화장하여 분골된 유골을 매장하는 것을 말한다)은 사용허가를 받은 자에 한정하며, 시장이 정하는 장소에 매장한다.

② 공설자연장지의 사용기한은 40년으로 하되, 사용기한이 만료되는 즉시 모든 권한은 시에 귀속된다. 다만, 자연장지의 수급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변경할 수 있다.

③ 공설자연장지에 안장된 골분은 사용기한에 관계없이 반환 또는 반출 할 수 없다.

제27조의4(공설자연장지의 면적제한 및 사용방법) ① 공설자연장지 1기의 사용면적은 잔디형의 경우 0.23제곱미터 이하, 수목형은 1.2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② 시장은 분묘 위치를 사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으로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자연장의 방법과 용기 기준에 관한 사항은 법 제10조에 따른다.

④ 그 밖에 자연장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3절 공설화장시설

제28조(명칭과 위치) 공설화장시설의 명칭은 “승화원” 이라 하고, 여수시 의곡길 494(소라면)에 위치한다.

제29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사망하여 공설화장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장시설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로 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
3. 「재해구호법」에 의한 구호대상자
4.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5.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자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6.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의사상자,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 여수시민의 상 수상자 및 이에 준하는 사람 중 국가 또는 시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7. 「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대상자

제30조(유택동산의 설치) ① 시장은 화장시설에서 화장한 유골을 봉안하지 않고 뿌리기를 희망하는 자를 위하여 유골을 뿌릴 수 있는 유택동산을 설치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유택동산에 뿌려진 유골에 대하여는 일정기간이 지나면 공설묘지 내 일정 지역을 정하여 합동 매장하여야 한다.

제4절 공설봉안시설

제31조(명칭과 위치) 공설봉안시설의 명칭은 “추모의 집”이라 하고, 여수시의곡길494(소라면)에 위치한다.

제32조(유골의 안치기간) ① 공설봉안시설의 유골 안치기간은 안치일로부터 15년으로 한다. 다만, 무연고자의 유골은 10년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회에 15년씩 2회에 한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만료일 이전까지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이하 “연고자”라 한다)가 시장에게 연장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유골 봉안) ① 유골을 봉안할 때에는 번호를 부여한 봉안자 명부를 비치하여야 하며, 정결하게 봉안하여야 한다.

② 유골을 봉안하는 도중 사용신청을 한 자로부터 유골 인도요구가 있을 때에는 사실 관계를 확인한 후 인도하여야 한다.

제34조(사용료 감면)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이 사망하여 공설봉안시설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50퍼센트를 감 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로 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
3. 「재해구호법」에 의한 구호대상자
4. 「여수시 헌혈 및 장기기증 등록 권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 기증자
5.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의사상자, 「상훈법」에 따른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 여수시민의 상 수상자 및 이 에 준하는 사람 중 국가 또는 시 발전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6. 「여수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 명문가 예우 대상자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

제34조의2(연장사용료)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설 봉안시설을 연장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장 사용허가 신청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120,000원
2. 제1호 외의 경우 : 500,000원

제35조(안치기간이 경과된 무연고 봉안유골의 처리) 안치기간이 경과하여도 유골인수를 청구하지 않는 무연고 봉안유골은 공설묘지 내 일정한 장소에 합 동 매장할 수 있다.

제3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공설장사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제10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구 분		적용 기준		일반시민	특례자	관외자
공설묘지	계	묘지1기당 6.61㎡/30년		600,000	780,000	-
	사용료			360,000	540,000	-
	관리비			240,000	240,000	-
공설 자연장지	사용료	잔디형	묘지1기당 0.23㎡/40년	320,000	480,000	-
		수목형	묘지1기당 1.20㎡/40년	416,000	624,000	-
공설 화장시설	사용료	15세 이상 (1구)		60,000	400,000	600,000
		15세 미만 (1구)		42,000	126,000	189,000
		개장유골 (1구)		30,000	90,000	-
		죽은 태아 (1구)		21,000	63,000	94,500
공설 봉안시설	사용료	봉안(1구)/15년		120,000	500,000	-

[별표 2]

공설장사시설의 사용 취소에 따른 환급 기준(제10조제3항 관련)

안치기간	1년 이내	2년 이내	3년 이내	4년 이내	5년 이내
환급비율	50%	40%	30%	20%	10%

1. 부부 봉안 시 기존 봉안자의 안치시점 및 사용기간은 이동 안치한 날부터 적용하고 신규사용료를 수납한다. 다만, 안치기간 5년 이내의 경우 환급비율에 따라 환불하며, 기존 안치자 중 감면자는 신규 사용료를 수납한다.

[별표 3]

「국가보훈 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제29조제2호 관련)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 전부개정 >	제2조(정의) “공설장사시설”이란 여수시(이하 “시” 라한다)에서 설치한 공설묘지, 공설자연장지, 공설 화장시설, 공설봉안시설과 그 부속시설을 말한다.
제9조(사용자의 자격) ① (생략) 1. (생략) 2. (생략) 3.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변사자 4. (생략) 5. (생략) ② (생략)	제9조(사용자의 자격) ① (현행과 같음) 1. (현행과 같음) 2. (현행과 같음) 3.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자 4.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위치) < 전부개정 >	제20조(위치) 공설묘지와 공설자연장지는 여수시 의곡길 494(소라면)에 위치한다.
제21조(공설묘지의 사용기간) ① - - - - - 매장일부터 15년으로 한다 ② - - - - - - 1회에 15년씩 3회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기간만료일 3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 - - - - 한다. ③ (생략) ④ (생략)	제21조(공설묘지의 사용기간) ① - - - - - 매장일부터 30년으로 한다 ② - - - - - - 1회에 한하여 30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시장에게 - - - - - 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제3절 화장시설	제3절 공설화장시설
제28조(명칭과 위치) 화장시설의 명칭은 “승화원”이라 하고,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1347-5번지 지선에 위치한다.	제28조(명칭과 위치) 공설화장시설의 명칭은 “승화원”이라하고, 여수시 의곡길494(소라면)에 위치한다.
제29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 - - - - - - - -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제29조(사용료 감면) 시장은 다음 - - - - - - - - - 전액 감면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p> <p>3. (생략)</p> <p>4. (생략)</p> <p>5.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자 변사자</p> <p>6. (생략)</p> <p>7. (생략)</p> <p>8. <신설></p>	<p>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로 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p> <p>3. (현행과 같음)</p> <p>4. (현행과 같음)</p> <p>5.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자</p> <p>6. (현행과 같음)</p> <p>7. (현행과 같음)</p> <p>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p>
<p>제4절 봉안당</p>	<p>제4절 공설봉안시설</p>
<p>제31조(명칭과 위치) 봉안당의 명칭은 “추모의 집”이라 하고, 여수시 소라면 봉두리 1347-5번지 지선에 위치한다.</p>	<p>제31조(명칭과 위치) 공설봉안시설의 명칭은 “추모의 집”이라 하고, 여수시 의곡길494(소라면)에 위치한다.</p>
<p>제32조(유골의 안치기간) ① 봉안당의 유골 - - - - - 10년으로 한다.</p> <p>② - - - - -</p> <p>- - - 있으며, 기간만료일 3개월 이내에 - - - - - 한다.</p>	<p>제32조(유골의 안치기간) ① 공설봉안당의 유골 - - - - - 10년으로 한다.</p> <p>② - - - - -</p> <p>- - - 있으며, 기간만료일 이전까지 - - - - - 한다.</p>
<p>제34조(사용료 감면) ① (생략)</p> <p>1. (생략)</p> <p>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p> <p>3. (생략)</p> <p>4. (생략)</p> <p>5. (생략)</p> <p>6. (생략)</p> <p>② 여수시 관내에서 발생한 무연고 변사자의 봉안당 사용료는 면제할 수 있다.</p>	<p>제34조(사용료 감면) ① (생략)</p> <p>2. 「국가보훈 기본법」에 따른 희생·공헌자로 별표 3에 해당하는 사람</p> <p>3. (생략)</p> <p>4. (생략)</p> <p>5. (생략)</p> <p>6. (생략)</p> <p>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관내에서 사망한 무연고자나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전액 감면할 수 있다.</p>

제34조의2(연장사용료) <신설>

제34조의2(연장사용료)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설봉안시설을 연장하여 사용하는 경우의 사용료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장 신청자는 법 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로 한다.
2. 연장 사용허가 신청자가 신청일 기준으로 시 관내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경우 : 120,000원
3. 제1호 외의 경우 : 500,000원

별표 1

구 분		적용 기준		일반시민	특례자	관외자
공설묘지	계	묘지1기당 6.61㎡/15년		300,000	390,000	-
	사용료			180,000	270,000	-
	관리비			120,000	120,000	-
자연장지	사용료	잔디형	묘지1기당 0.23㎡/40년	320,000	480,000	-
		수목형	묘지1기당 1.20㎡/40년	416,000	624,000	-
화장시설	사용료	15세 이상 (1구)		60,000	400,000	600,000
		15세 미만 (1구)		42,000	126,000	189,000
		개장유골 (1구)		30,000	90,000	-
		죽은 태아 (1구)		21,000	63,000	94,500
봉 안 당	사용료	봉안(1구)/15년		120,000	500,000	-

별표 1

구 분		적용 기준		일반시민	특례자	관외자
공설묘지	계	묘지1기당 6.61㎡/30년		600,000	780,000	-
	사용료			360,000	540,000	-
	관리비			240,000	240,000	-
자연장지	사용료	잔디형	묘지1기당 0.23㎡/40년	320,000	480,000	-
		수목형	묘지1기당 1.20㎡/40년	416,000	624,000	-
화장시설	사용료	15세 이상 (1구)		60,000	400,000	600,000
		15세 미만 (1구)		42,000	126,000	189,000
		개장유골 (1구)		30,000	90,000	-
		죽은 태아 (1구)		21,000	63,000	94,500
봉 안 당	사용료	봉안(1구)/15년		120,000	500,000	-

별표 3 <신설>

별표 3

국가보훈기본법의 희생·공헌자 범위(제29조각2호 관련)

법 률 명	적 용 대 상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 혁명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 발전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특별공로자, 지원공상군경, 지원순직군경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순국선열, 애국지사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재해사망군경, 재해부상군경, 재해사망공무원, 재해부상공무원

	법 률 명	적 용 대 상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6.25참전유공자, 월남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증 환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5·18민주화운동 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그 밖의 5·18 민주화운동희생자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사망자 또는 행방불명자, 특수임무부상자, 특수임무공로자

분할개시결정 공고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아래 공유토지에 대한 분할개시결정이 있어 다음과 같이 공고하니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분할개시결정서 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3주 이내에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1. 공고 기간 : 2019. 6. 17. ~ 2019. 7. 8.(3주)
2. 공고 내용

토지 표시						공유토지분할 신청인			동의인 외 인
시	읍·면	동·리	지번	지목	면적(m ²)	성명	생년월일	주 소	
			내	역	붙	임			

2019년 6월 일

여 수 시 장

■ 분할개시결정 공고 내역

토 지 표 시						공 유 토 지 분 할 신 청 인			동의인 외 인
시	읍·면	리·동	지 번	지목	면적 (m ²)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여수	-	학동	49-4	대	401.3	조병*	-	여수시	1
여수	율촌	산수	858-1	대	790	최맹*	-	여수시	1
여수	소라	현천	324-1	대	1,000	이남*	-	여수시	1
여수	소라	현천	1022	잡종지	499	이영*	-	여수시	1
여수	-	고소	14-1	대	259	강태*	-	여수시	1
여수	-	동산	388	대	106	백영*	-	여수시	1
여수	-	연등	217-14	대	212	노만*	-	여수시	2
여수	-	봉강	399	대	211	양주*	-	여수시	1
여수	-	봉산	279-2	대	202.0	윤주*	-	서울특별시	1
여수	-	남산	612	대	165	김현*	-	인천광역시	1
여수	돌산	평사	3	대	317	김춘*	-	여수시	1
여수	돌산	우두	690-1	대	542	김수*	-	여수시	1

통 장 모 집 공 고

쌍봉동 43통 통장의 사의 표명에 따라 『여수시 이장·통장·반장 임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해당 관할 통장을 모집하오니, 기간 내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모집통장 : 43통장(관할구역 : GS칼텍스 사택)
2. 공고기간 : '19. 06. 17. ~ '19. 06. 26. 【9일간】
3. 접수기간 : '19. 06. 17. ~ '19. 06. 26. 【9일간】
4. 접수장소 : 쌍봉동주민센터
5. 신청자격
 - 모집공고일 기준 당해 통 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는 20세 이상의 주민
 - 봉사정신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과 열의가 있는 주민
6. 신청 제외자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자
 -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선출방법
 - 신청자가 1인일 경우 심사 후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동장 직권임명
 - 신청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선임기준안에 의한 심사를 거쳐 동장이 최종선임
8. 제출서류
 - 통장후보자지원신청서 1부, 주민추천서 1부(해당 통 거주 주민 20명이상 추천)
 - 개인정보이용동의서, 기타 해당자에 한하여 제출할 서류(경력에 따라 별도 추가 가점배정)
 - 사회복지시설 및 봉사단체 경력증명서, 상훈(표창장 등 사본)
9. 기타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출서류의 경력 및 자격내용 허위판명 즉시 통장 임명을 해임합니다.
 - 심사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쌍봉동주민센터 (☎659-157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9. 6. 17.

쌍 봉 동 장

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

지원대상	여수시 쌍봉동 ()통장					
사 진 (3×4cm)	성 명	한글 (한자)	생년 월일	(연령 만 세)	성별	남·여
	주 소		거주 기간 ~ 현재(년) (해당 리·통 주민등록 거주기간)		
	연락처	휴대폰 자택(사무실)	이메일	@		
	직 업	(구체적 기재)				
최종학력 및 주요경력	년	월	일	내 용		비고
봉사활동실적 (자원봉사센터 또는 공공기관에서 인정하는 봉사실적)	봉사활동 장소		활동기간	활동시간	활동내용	비고
수상내역 (공공기관 상훈에 한함)	훈격 (기관명)	수상부문		수상일자	비고	

본인은 상기 내용이 틀림없음을 확인하며 위의 내용과 관련 필요사항을 열람 또는 발급에 동의하며, 「여수시 이장·통장 임명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이장·통장 후보자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여수시 쌍봉동장 귀하

- ※ 첨부 : 1. 주민등록등·초본, 2. 자격 및 주요경력 증빙서류(해당자에 한함)
 3. 주민총회 등에서 추천을 받은 경우 추천서 및 회의록(해당자에 한함)
 4. 주민 20명 이상 추천의 경우 주민 추천서(해당자에 한함)

주민 추천서

○ 통장 추천 대상자

- 성 명 : (한자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휴대전화 :)

상기인을 여수시 쌍봉동 ()통장으로 추천합니다.

○ 추천인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날인(서명)	추천일

2019년도 3/4분기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 공고

돌산읍 주민자치센터에서는 주민들의 건강 및 여가선용을 위해 2019년도 프로그램 수강생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1. 운영 프로그램

- 요가A, 요가B, 노래, 탁구, 헬스

2. 운영기간 : 2019. 7. 1. ~ 2019. 9. 30.(3개월)

3. 모집기간 : 2019. 6. 17. ~ 2019. 7. 1.(15일)

4. 모집장소 : 돌산읍 주민자치센터(☎659-1701)

5. 모집인원 : 총 250명(선착순 모집)

6. 프로그램별 세부운영계획

프로그램명	운영		장소	모집인원(명)	월수강료(원)	비고
	요일	시간				
				250		
요가A	월, 수	10:00 ~ 11:30	다목적실	40	15,000	
요가B	화, 목	10:00 ~ 11:30	다목적실	40	15,000	
노래	화, 목	14:00 ~ 15:40	다목적실	40	15,000	
탁구	월, 수	18:00 ~ 20:00	다목적실	30	15,000	
헬스	월~금	09:00 ~ 21:00	헬스장	100	15,000	

※ 여수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프로그램별 수강신청 인원이 20명 미만일 경우 폐강 될 수 있으며, 운영 요일 및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019년 6월 17일

여수시 돌산읍장